

의안
번호

3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9. 03.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인순의원 외 8명

나. 의안번호 : 제325호

다. 제출일자 : 2024. 08. 14.

라. 회부일자 : 2024. 08. 28.

2. 제안이유

-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 8.16) 사항 반영 (안 제5조제1항제3호)
- 나.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 추가 (안 제5조제1항제7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20. ~ 2024. 08. 2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¹⁾를 추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보호하려는 것임.

1)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형 등의 유형으로 조성

□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3호**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 2023. 8.16 시행 2024. 8.17)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현행 조례상 금연구역이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되어 있어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등에 제공된 시설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1항제7호**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추가하면서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공개공지의 경우, 쾌적한 환경과 주민편의를 위해 사유지 내의 공지를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설치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면서 빈번한 흡연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공중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되도록 흡연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성북구 지역내 금연구역은 '24. 7월 현재 총 10,463개소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법(9,595개소), 시조례(73개소), 구조례(795개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연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성북구 총3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금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에 맞추어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건축법 >

제4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공개공지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소유 및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관련 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붙임 2 성북구 공개공지 현황 ('24.3. 기준)

□ 총 37개소, 총 설치면적 12,828㎡

연번	행정동	건물명	사용승인	용도지역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설치면적
1	길음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생명교회	2009-12-09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1,510.30	747.87	7,735.28	104.40
2	길음동	현대백화점(미아점)	2001-08-23	일반상업지역	판매시설	8,119.00	4,850.12	88,702.08	2,349.76
3	길음동	서울척병원	2011-08-31	일반상업지역	의료시설	813.40	478.26	8,234.10	45.38
4	동선동1가	유타	2008-09-02	일반상업지역	판매시설	2,159.60	1,060.48	26,488.20	374.87
5	동선동1가	코아루센 타시아	2010-06-25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2,597.80	1,525.18	21,310.34	192.10
6	동선동1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일교회	2013-12-20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1,527.12	887.62	5,371.47	86.12
7	동선동3가	성신여대 기숙사	2020-06-15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1,115.60	542.85	2,864.22	45.05
8	동선동4가	베스트웨스턴 성북관광호텔	2015-08-03	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	993.90	596.16	9,785.00	53.27
9	동소문동4가	드림트리	1998-12-29	일반상업지역	업무시설	1,123.80	645.21	6,941.18	61.39
10	동소문동4가	흥화브라운 동소문빌딩	2006-10-02	일반상업지역	업무시설	2,413.52	1,108.48	10,911.68	263.56
11	동소문동4가	부라다리빙텔	2003-03-04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	2,313.10	1,168.25	16,814.29	184.50
12	동소문동5가	돈암 동일하이빌	2006-04-28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4,538.60	2,486.60	47,086.58	981.41
13	동소문동5가	성신여대역 솔하임	2018-05-28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539.20	320.64	3,479.04	35.24
14	동소문동6가	시티플레이스	2015-01-16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973.50	447.22	5,829.55	45.64
15	동소문동6가	보미리즌빌	2012-05-21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1,258.20	1,237.82	8,615.08	64.10
16	보문동4가	보문하우스토리	2011-08-05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3,828.60	2,233.58	32,444.87	381.61
17	삼선동3가	성북세무서	2017-10-13	일반주거지역	업무시설	2,883.60	1,389.97	7,450.12	223.11
18	삼선동3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본교회	2006-11-22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3,135.70	1,867.36	9,784.31	660.83

19	삼선동5가	서울성북경찰서	2008-11-27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5,375.00	2,112.49	13,253.85	337.41
20	삼선동5가	성북구청	2009-04-29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3,830.00	2,246.24	27,489.39	564.54
21	석관동	광천교회	2009-12-07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2,517.00	1,351.73	12,672.41	246.98
22	장위동	장위동 동원베네스트	2005-11-01	근린상업지역	공동주택	2,210.00	1,088.74	17,742.82	289.45
23	장위동	석계역 한일 노벨리아시티	2019-09-03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3,026.00	1,707.42	18,922.35	158.47
24	장위동	H하우스 장위	2019-09-03	근린상업지역	공동주택	1,993.00	1,178.32	15,625.15	40.45
25	종암동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	2008-05-01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4,969.10	2,966.39	34,666.29	631.58
26	종암동	성북구의회청사	2000-05-22	일반주거지역	운동시설	5,306.83	1,524.40	5,846.03	확인불가
27	하월곡동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2017-08-10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14,783.00	5,909.98	25,615.53	1,040.00
28	하월곡동	월곡갑을명가	2007-07-30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4,128.00	2,426.98	31,267.21	689.32
29	하월곡동	성북구 보건소	1999-06-30	준주거지역	업무시설	1,185.00	666.70	7,426.87	확인불가
30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	2010-07-02	준주거지역	판매시설	12,694.00	6,332.17	124,700.55	1,337.16
31	하월곡동	영광프라자	2003-11-17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	2,475.00	1,472.69	11,054.64	178.76
32	하월곡동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북성전	1984-04-10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5,437.00	1,286.66	5,923.06	331.97
33	하월곡동	삼양식품빌딩	-	일반주거지역	업무시설	2,236.00	906.91	9,620.24	134.24
34	하월곡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	일반상업지역	기타	3,331.00	2,541.63	9,994.53	168.56
35	하월곡동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 의료재단	-	일반상업지역	의료시설	1,357.00	797.07	9,886.30	96.15
36	하월곡동	삼전솔하임3차	-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910.00	440.36	7,286.91	45.93
37	하월곡동	성북힐스테이트	-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4,144.00	1,981.76	38,457.96	385.14